〈의안번호 제1007호〉

2021. 7. 13.(화)
제1차 교육위원회

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교 육 위 원 회

〈의안번호 제1007호〉

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 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 출 자: 2021. 6. 18. 경상남도교육감

○ 회 부 일 자: 2021. 6. 18.

○ 의 결 일 자: 2021. 7. 13.

2. 제안 이유

○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설치를 통한 민간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,

학교 건물 옥상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및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』 제26조, 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4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 내용

○ 발전사업자: 한국학교발전(주)(대표자: 민경명)

○ 설치장소: 김해모산중학교 건물 옥상

○ 시설형태: 태양전지 모듈, 인버터 및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

○ 사업내역

(단위: 천원)

설치기관		총 면적 (㎡)	설치면적 (㎡)	설치용량 (kw)	연간발전량 (kwh)	연간예상 수익	건설비	연간 대부료
기관명	구분							
김해 모산중	교사동 건물	1,021.85	511.357	97.875	135,752.6	24,435	180,000	3,915

※ 연간예상수익: 연간발전량*180원, 연간대부료: 설치용량*40,000원

※ 설치용량, 사용료 등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

○ 사업방식: 민간투자사업(설치 및 운영)

- 발전사업자: 투자(시공) + 운영관리 및 전력수익(계약기간)
- 학교: 부지제공 + 임대수익(계약기간)

○ 사업기간: 2021. 8. ~ 2031. 8.(10년간)

- 사용자가 법령이나 허가조건에 위반이 없는 경우 1회 10년 연장 가능

○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내역

학교명	김해모산중학교	사진설명	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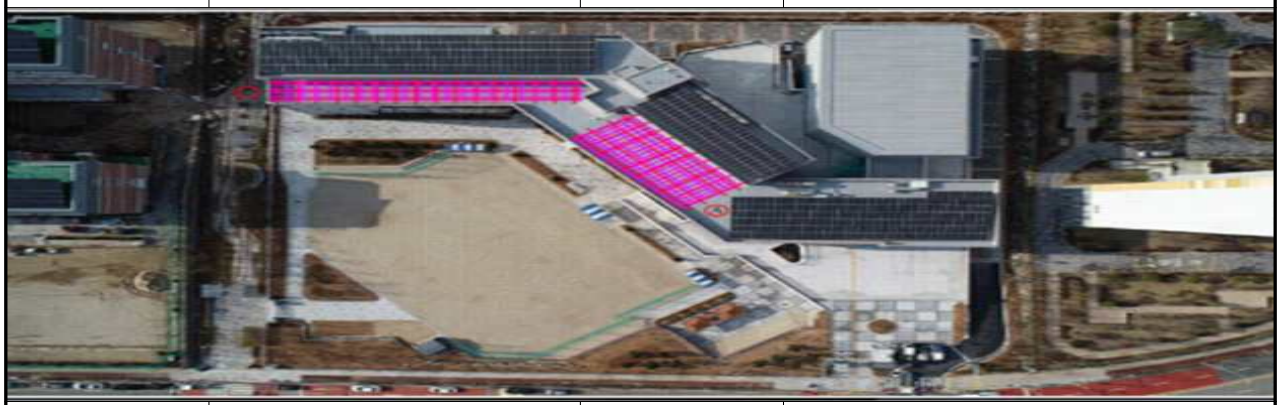

학교명	김해모산중학교	사진설명	설치위치(본관 4층, 분홍색부분)

4. 참고 사항

○ 관련법규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- 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4조의2(영구시설물의 축조)

5. 검토 의견

○ 본 동의안은 김해모산중학교 건물 옥상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[1] 및 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4조의2[2]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[3],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

---

1) 제26조(국유재산 · 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**신 ·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·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**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 ·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·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.<개정 2020. 3. 31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**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**에는 **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** 다만, **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**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 3. 31.>

2) 2020. 1. 20. 개정(관련 조문 신설)

3)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개정 2014. 7. 7., 2019. 7. 2., 2020. 12. 22.>

3. 사용 ·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 · 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.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.

9.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(空中) · 지상 ·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

운영기준」 제7조[4]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,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[5] 및 건물 구조안전 확인 결과[6]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

○ 따라서,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정책에 동참하고 학교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 증대 및 신·재생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 등 교육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시설물 설치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다만, 민간투자사업으로 영구축조물 설치 시 유지관리 소홀과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의 폐혜가 발생 할 소지가 있고, 시설물 설치 시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 하나 동일 학교 군내 학생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증축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, 향후 김해모산중학교 학교군[7] 내 학생 배치 계획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절차 및 운영 전반(시설물 유지관리 계획, 철거 계획 등)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

아울러, 설치 공사에 따른 옥상 누수 및 학생 안전 문제, 태양광 판넬 빛 반사 등으로 인한 민원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, 기존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

---

4) 제7조(영구시설물의 축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·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.
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<별표 2>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5)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알림[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-4846(2021. 3. 30.)] - 원안가결(자체 승인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)

6) 구조설계 수행(2020. 9. 13.,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건안) - 안전한 것으로 확인됨

7) 김해 제14학교군

6. 주요 질의 · 답변 내용: 생략

7. 토론 내용: 생략

8. 심사 결과

○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**원안 가결**

관계법령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7. 7., 2019. 7. 2., 2020. 12. 22.>

3.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.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.

9.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(空中)·지상·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

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7. 7.>

□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.<개정 2020. 3. 31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 3. 31.>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<개정 2020. 3. 31.>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1.>

□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

제7조(영구시설물의 축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·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.
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<별표 2>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□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제4조의2(영구시설물의 축조)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신·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상남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 [조 신설 2020. 1. 2. 조4721]